

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상정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배 효 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측량법」이 폐지되고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9774호, 2009. 6. 9. 제정·2009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부천시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법명 및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 - 「측량법」 제58조제4항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 - 「측량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- 특이사항 없음	-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측량법」 제58조제4항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”를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천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자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인이상”을 “3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심의, 결정”을 “심의·의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지명등”을 “지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지명중”을 “지명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명등”을 “지명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견청취등”을 “의견청취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운영 등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56호
의결 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2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측량법」이 폐지되고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9774호, 2009. 6. 9. 제정·2009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부천시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법령 및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- 「측량법」 제58조제4항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 - 「측량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

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측량법」 제58조제4항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”를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천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자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인이상”을 “3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심의, 결정”을 “심의·의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지명 등”을 “지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지명중”을 “지명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명등”을 “지명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견청취등”을 “의견청취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운영 등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측량법</u>」 제58조제4항 및 <u>측량법시행령</u>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지명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</u> 및 <u>부위원장</u>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자중에서</u>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</u></p> <p>3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간사와 서기는 각 1인</u>으로 하되,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, 결정</u>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</p>	<p>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천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-----<u>위원장</u>과 <u>부위원장</u>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자</u> 중에서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3명 이상</u>-----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1명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조(기능) -----</p> <p>-----<u>심의·의결</u>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<u>제4조의 규정</u>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, 지표물 <u>지명등</u>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② <u>전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경 과정을 포함하여 <u>지명중</u>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<u>지명등</u>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,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<u>제4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<u>지명 등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지명 중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지명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의견청취)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<u>의견청취등</u>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의견청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의견청취 등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 <u>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중요한 사항</p>	<p>제8조(회의록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<p>제9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<u>운영등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시행규칙) -----<u>운영 등에</u>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

<관계 법령발췌서>

○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제91조 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